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 BEST CHOICE 정기예금 』 특약 (구 외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 내용 : 기본적용약관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 약관의 적용</p> <p>BEST CHOICE 정기예금 (구 외환은행) 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거치식 예금 약관(구 외환은행), 예금거래 기본 약관(구 외환은행) 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2조 ~ 제11조 (생략)</p>	<p>제1조 적용범위</p> <p>BEST CHOICE 정기예금 (구 외환은행) 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거치식예금 약관,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2조 ~ 제11조 (좌동)</p>	<p>기본적용약관 변경</p>

「BEST CHOICE 정기예금 특약」(구 외환은행)

제1조 적용범위

BEST CHOICE 정기예금 (구 외환은행)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**거치식예금 약관,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적용합니다.**

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

제3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4조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개월이상 5년내로 정하며,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

제5조 용어의 정의

- ① "시장지수" 라 함은 KOSPI200 지수 및 개별주가 등 주가지수와 ,환율, 금리, 상품 등 은행법 등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파생거래가 가능한 지수를 의미합니다.
- ② "기준지수" 라 함은 지수연동예금의 이자 지급을 위한 해당 시장지수의 기준가격으로서 예금가입시 은행과 고객이 합의한 정한 특정일자 또는 특정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지수를 의미합니다.
- ③ "만기(결정)지수" 라 함은 지수연동예금의 이자 지급을 위한 해당 시장지수의 만기가격으로서 예금 가입시 은행과 고객이 합의한 특정일자 또는 특정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지수를 의미합니다.
- ④ "예금의 모집기간" 이라 함은 이 예금의 판매를 위해 일정기간 설정한 판매기간을 말하며, "예금의 계약기간" 은 모집기간 종료후 기준지수 결정일부터 예금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
제6조 상품 유형

이 예금은 아래의 상품유형중 모집시마다 은행이 정하여 판매하며, 계약기간중 가입시 정한 상품유형 외 다른 상품유형으로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1. 상승형 또는 하락형 : 예금 계약기간중 특정 시점 또는 기간동안에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비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
2. 안정형(범위형) : 예금 계약기간중 일정범위내에서 만기지수가 움직이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
3. 양방향형 : 상승형과 하락형 또는 안정형 구조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
4. 혼합형 : 서로 다른 시장지수를 혼합하여 만든 유형에 적용되는 구조

제7조 이자의 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모집기간 이자와 계약기간 이자로 구분합니다.
- ② 모집기간 이자는 예금 가입시 예금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며, 예금의 만기시에 계약기간 이자와 함께 지급합니다. 다만, 모집시 은행과 가입자와의 특약에 의해 지급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- ③ 계약기간 이자는 상품유형에서 정한 지수 변동율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만기해지시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④ 예금의 중도해지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⑤ 이 예금의 만기후 이자는 일반정기예금의 만기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제8조 거래제한

이 예금은 분할인출 및 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

제9조 중도해지

이 예금의 계약기간 개시후 중도해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 부득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예금 가입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가입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이자율조건표의 제공

기준지수결정일 익영업일 이후에 이자율조건표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앞 교부합니다.

제11조 기타

- ① 천재지변, 전쟁, 기타 통제 불가능한 사항으로 지수 및 관련거래가 제한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지수 및 약정금리 지급시기 등을 정하기로 합니다.
- ② 상품명 표기시 시장지수를 BEST CHOICE 와 정기예금 사이에 부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부칙(제정)

이 특약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

부칙(1)

이 특약은 2014년 1월 14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부칙(2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